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 제8조, 제9조
- 2)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제18조
- 3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4)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- 5) 「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의2
- 6) 「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」 제2조, 제3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

- 1) 입법예고: 해당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경남 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
- 경남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
 - 경남연구원은 경상남도가 도정 발전 등과 관련한 조사 연구를 위해 설립한 연구기관임.
 - 경상남도는 「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남연구원 출연 근거를 두었음.

- 출연목적의 타당성
 - 지방자치단체는 「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경남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.

<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3조(사업)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4. 지방자치단체·지방의회, 타 기관·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

제5조(기금)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도와 도내의 각 시·군(이하 “지방자치단체”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그 밖에 출연금으로 조성한다.

제5조의2(운영재원)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과실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연구·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)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는 지역발전과 관계되는 계획 및 정책수립 등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연구·조사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.

○ 출연금의 적정성

- 20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.

○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, 경남연구원은 「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설립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이나, 이번 출연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10. 18. 원안가결